

제364회 국회(정기회)
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

업 무 현 황

2018. 10.



방송통신위원회

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

목 차

I. 일반 현황	1
II. 주요업무 추진 현황	3
1.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	3
2. 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	8
3. 지속 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생태계 구축	12
4. 미래 대비 신산업 활성화	15
III. 주요 현안 과제	18
IV. 참고 자료	20

I.

일반 현황

□ 연 혁

- 2008. 2. 29. 방송통신위원회 설립
- 2013. 3. 23.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개편
- 2017. 8. 1. 제4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

□ 주요 업무

- 지상파 방송 및 종편·보도 방송 채널 관련 정책
 - 방송광고 정책, 편성평가 정책, 방송진흥 기획, 방송정책 기획
 - 방송통신 시장 조사 및 이용자 보호, 시청자 권익 증진, 개인정보 보호 및 인터넷 윤리에 관한 사항
 - 방송용 주파수 관리에 관한 사항 등
- ※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, 정보통신망 상의 불법정보 심의 등에 관한 사항은 ‘방송통신심의위원회’가 수행

□ 소관 법률

분 야	법 률 명
방 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• 방송통신 발전 기본법 (일부)• 방송법 (일부)• 한국교육방송공사법• 방송문화진흥회법• 지역방송 발전 지원 특별법• 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•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(일부)
통 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전기통신사업법 (일부)•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(일부)•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(일부)•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• 전파법 (일부)

□ 조직 및 정원

○ 조직 : 1처 3국 1관 20과(담당관) / 1소속기관



○ 정원 ('18. 10월 현재)

구분	정무직	고위공무원단	3·4급	4급	4·5급	5급	6급 이하	계
본부	5	5	5	16	16	72	110	229명
소속기관	-	-	-	1	1	4	35	41명

□ 예산 및 기금 : ('17년) 2,393억원 ⇒ ('18년) 2,386억원 [△7억원]

- (재원) 일반회계 564억원, 방송통신발전기금 1,822억원
- (기능) 인건비 194억원, 기본경비 40억원, 주요사업비 2,153억원

□ 주요 유관기관

기관명	대표자	주요기능	근거법률
한국방송공사 (KBS)	양승동	국가 기간방송으로서 국내·외 대상 방송 실시, 방송문화 보급 및 수반 사업 등	방송법 제43조
한국교육방송공사 (EBS)	장해량	교육·지식·정보·문화·교양 분야의 방송 콘텐츠 제공, 교육방송 관련 연구개발 등	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7조
방송문화진흥회	김상균	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 사업 수행 등	방송문화진흥회법 제5조
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(KOBACO)	김기만	방송광고 판매 대행 및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수행 등	방송광고 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
시청자미디어재단	신태섭	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수행 등	방송법 제90조의2

Ⅱ.

주요업무 추진 현황

1. 공정하고 자유로운 방송통신환경 조성

1.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강화

□ 개요

- 방송의 공공성·공정성, 올바른 방송의 역할 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'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의 가치'를 제대로 구현하고 공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

□ 추진 실적

가. 공영 방송의 자유와 독립 신장

- (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역할 정립) 미래지향적 공영방송을 구현할 수 있도록 방통위 내에 자문기구인 '방송미래발전위원회'를 운영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 추진('17.10월~)

< 방송미래발전위원회 분과 및 정책 과제 >

< 1분과 >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	< 2분과 > 제작·편성 자율성 제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▪ 공영방송 사장 선임▪ 기타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편성위원회 설치·운영 개선▪ 편성규약 등 관련 제도 개선▪ 기타 제작 자율성 관련 사항

- 방송미래발전위원회가 '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방송 제작 자율성 제고에 관한 정책제안서'를 제출(8.31)함에 따라, 방통위 차원의 논의를 거쳐 관련 입장을 마련한 후 국회 등에 제시 예정
- (공영방송 재원 투명성 제고)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신료 산정·징수·배분 등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('18.10월), 수신료의 면제·감액·가산금 등 법령 개정 추진

나. 방송의 공정성·공익성 및 사회적 책임 제고

- (재허가·재승인 조건 이행점검) 지상파·종편·보도채널 등의 재허가·재승인 시 부여한 공적책무 조건* 등에 대해 이행 점검 실시('18.1월~)
 - ※ 종편PP의 방송 품격제고 조건과 지상파방송의 경영투명성 및 콘텐츠 투자 강화, 외주제작 및 재난방송 가이드라인 등
- (재난방송의 신속성·정확성 향상)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방송을 위해 종합매뉴얼 표준안을 개정('18.3월)하고, 매뉴얼의 구체적 재난 유형 및 정보음 등의 기준을 방송사 자체 매뉴얼에 적용
- (방송 신뢰성과 품격 제고) 방송의 오보·막말에 대한 모니터링 및 법정 제재를 강화하고, 종편PP 재승인 시 부가한 오보·막말·편파방송 심의제재 감소 조건의 이행 실적을 점검('18.1월~)
- (공익채널 제도 개선) 공익채널의 유효기간을 확대(1년→2년)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('18.2월),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을 고시로 제정('18.7월)
 - ※ '18년도 공익채널 선정 현황 : 사회복지(4개), 과학·문화 진흥(3개), 교육지원(3개)
- (남북 방송통신 교류 사업 추진) 남북 방송통신 교류에 대한 관심과 협력 유도를 위해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, 민족 동질성회복을 위해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 추진
 - ※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남북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, 콘텐츠 및 기술 등에 대한 직접교류·협력 등 추진

□ 향후 계획

-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방통위 입장 국회 제출 : '18. 하반기
- 수신료 제도개선을 위한 방송법령 개정안 마련 : '18. 12월
- 남북 방송통신 국제컨퍼런스 개최 : '18. 11월
- 통일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방영 : '18. 12월

2. 미디어의 다양성 및 지역성 증진

□ 개요

- 방송통신이 민주적 여론형성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미디어 이용 행태, 인구학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미디어 다양성과 지역성을 구현

□ 추진 실적

- (통합시청점유율 도입 추진) 고정형 TV와 스마트폰·PC를 통한 시청기록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추진
- (방송정보 활용기반 구축) 미디어 다양성 정보 등을 공유하는 미디어 통계정보 시스템과 방송콘텐츠에 대한 국내외 시청자 반응을 분석하는 방송콘텐츠 가치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·운영('18.1월~)
- (지상파 라디오방송 효율화) 국내 라디오 산업 진단 및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지상파 라디오 정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전문가 연구반 및 자문위원회 구성·운영 추진
- (지역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) SNS·포털 전용 콘텐츠 등 프로그램 제작과 해외 판매용 프로그램 재제작 등을 지원하고('18.3월~), PD·작가·촬영·편집 등 분야별 교육 및 뉴미디어 교육 추진('18.4월~)
- (지역민방 편성규제 개선) 지역민방 경영 악화 등 제작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자체편성 의무비율 규제*를 합리적으로 개선 추진('18.9월~)

* 현재 지역민영방송사의 경우 자체편성비율(23~31%) 규제 적용

□ 향후 계획

- 통합시청점유율 도입 방안 마련 : '18. 12월
- 지상파 라디오 정책 자문기구 설치 : '18. 10월
- 싱가포르 ATF(Asia Television Forum) 지역방송관 운영 등 마케팅 지원 : '18. 12월

3.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신장 및 역기능 대응 강화

□ 개 요

-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,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이버폭력·디지털성범죄 등 역기능에는 적극 대응

□ 추진 실적

가.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 증진

- (임시조치 제도 개선) 포털 등의 일방적인 ‘임시조치’*에 대해 정보계재자의 이의제기 절차 등 반론기회를 제공하고,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장이 균형을 이루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 추진

* 인터넷 게시글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가 포털사업자에게 해당 정보 삭제 요청시 포털사업자가 임시로 삭제·차단하는 조치

※ 정보통신망법 개정안(정부 '16.6월 / 유승희 의원 '16.8월) 국회 계류

- (자율규제 기반 조성) 사업자단체 지원 및 시책, 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의무 등 자율규제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추진

※ 정보통신망법 개정안(김성수 의원, '17.12월) 국회 계류

나. 인터넷 역기능 대응 강화

- (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차단) 부가통신사업자 등이 음란물 유통사실 인지시 삭제·접속 차단하도록 의무 부과 추진

※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(정부 '16.12월) 국회 계류

- 피해자 요청시 사업자의 자율적 선차단 조치와 함께 긴급심의를 실시하여 삭제·차단 대응을 현행 약 11일에서 2~3일로 단축('18.4월~)

- 불법영상물의 편집·변형 재유통을 막는 DNA필터링 기술 적용, 방심위-경찰청 간 공조시스템을 구축하여 효과적 차단 추진

- 웹하드사이트(100개) 대상 디지털성범죄물 상시점검* 실시 및 상습유포자 수사의뢰(상습유포 ID 333개, '18.9월) 등 엄정 대처
 - * 상시점검('18.1~8월) 및 집중점검(5.29~9.5)을 통해 11,528건 즉시삭제
- (클린인터넷방송 환경조성) 인터넷 개인방송의 선정·폭력성 방지를 위해 구성된 '클린인터넷방송협의회'를 통해 자율규제 가이드라인(진행자 윤리강령, 제작 기준, 연령등급 등) 마련 등 자율규제 활성화 추진
- (가짜뉴스 확산 방지) 언론계·학계·연구기관 등을 중심으로 민간 팩트체크 기능 활성화를 위한 자율규제 기반조성
 - 가짜뉴스 신고센터 운영(KISO, 5.1~) 및 SNU 팩트체크 결과 네이버 뉴스홈에 공유(1.29~), 올바른 인터넷이용교육 실시(8만8천명, 9월말)
- (청소년 이용환경 개선)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'사이버 안심존', 사이버 폭력 의심문자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'스마트 안심드림서비스' 개선·확대(연중)
 - ※ 사이버안심존 : ('17년) 750개교 → ('18년) 1,100개교
 - 스마트안심드림 : ('17년) 38,000개 → ('18년) 42,000개
- (전국민 인터넷 윤리교육) 청소년, 장애인, 교사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참여형·실천형 교육을 실시하고, 국민 참여형 콘텐츠 공모전 및 우수 콘텐츠 발굴·시상 추진
 - ※ (윤리교육) 유아·청소년(55,157명), 성인·학부모(29,626명), 교원(1,605명), 장애 청소년 등 취약계층(2,045명) 교육(9월말)
 - ※ (국민참여 행사) 인터넷드림 창작동요·음악제(9.14), 인터넷 윤리대전(11.30) 등

□ 향후 계획

- 불법영상물 DNA 필터링 기술 적용 : '18. 12월
- 인터넷 방송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: '18. 12월
- 가짜뉴스 자율규제 기반조성 정책 방안 마련 : '18. 12월

2.

이용자의 능동적 참여와 권리 강화

1. 이용자의 미디어 역량 강화 및 참여 확대

□ 개요

- 미디어가 소통·지식습득·관계망 형성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됨에 따라, 모든 국민이 소외되지 않고 미디어를 활용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

□ 추진 실적

가. 시청자 참여 및 소통 활성화

- (시청자 참여 확대) 시청자 밀착형 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지역 지상파, 공동체라디오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('17년 2.7억원 → '18년 3.4억원)하고, 시청자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
- (공동체라디오 활성화) 전국 7개 지역에 도입된 공동체 라디오의 추가 확대 및 규제 완화 등 검토
 - 출력 증강(과기부 협의) 및 허가 유효기간 규제 완화(3년 → 5년)로 경영 개선 (시행령 개정안 의결, '18.9월)

나. 미디어교육 강화

- (시청자미디어센터 확충) 지역간 차별 없는 시청자 권익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7개* 센터에 1개 센터(경기)를 추가 구축하고 있으며, 중장기적으로 광역권별 1개 센터 구축 추진(~'22년)

* 7개 센터 : 부산, 광주, 대전, 인천, 강원, 서울, 울산

- (맞춤형 미디어교육) 생애주기별·계층별로 미디어의 이해와 활용 및 참여 능력 제고를 위한 맞춤형 미디어교육 실시
 - 자유학기제 미디어교육, 동아리 미디어교육, 대학생 대상 학점인증 교육과정 등 학교미디어 교육 실시('18.3월~)
 - 미디어센터의 지역별 수요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* 개발·운영('18.4월~) 및 도서산간 지역에 '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' 운영('18.3월~)
 - * 광주(노인 미디어교육), 강원(시각장애인 교육), 인천(스마트미디어교육) 등
- ※ 신경민의원외 '18.5.18. 발의한 「미디어교육지원법」 입법 지원

다.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

- (장애인방송 환경 개선) 스마트 수어방송서비스*의 상용화('19년 목표)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성능 개선 및 시범방송 확대('17년 7개사→'18년 9개사) 실시
 - * 청각장애인과 일반인 모두의 TV시청 편의를 위해, 수어방송의 영상 크기·위치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서비스
- (장애인방송 품질 제고) 장애인방송의 질적 개선을 위해 주시청 시간대 편성비율 확대 유도
- (장애인용 TV 보급 확대) 저소득층 시청각 장애인(10만명)에 대한 방송수신기 우선 보급으로 누적보급률 68% 달성('21년까지 100% 보급 목표)
 - ※ 17개 지자체에 홍보물 집중 배포(7만부), 온·오프라인 배너 보급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찾아가는 홍보 추진(6~7월), 보급대상자 신청접수 및 선정(7~8월), 보급 설치(8월~)

□ 향후 계획

-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종합계획 마련 : '18. 12월
- 시청자미디어센터 2개 지역(충북, 세종) 추가 구축 : '19년말
- 장애인방송 품질 제고 관련 고시 개정(안) 마련 : '18. 10월

2.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 강화

□ 개 요

- 앱·IoT·AI 등 신기술 확산과 방송통신융합의 고도화로 서비스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관련된 이용자 피해도 급증함에 따라 이용자 보호 제도 개선 및 보호환경 조성

□ 추진 실적

가. 이용자 보호 및 피해 구제 실질화

- (이용자보호업무 평가 확대) 이용자 피해예방 및 불만처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내실화 및 대상 사업자 확대
 - 이용자 불편사항 및 피해구제 관련 평가를 강화하고, 앱마켓 사업자에 대해서 최초로 **본평가**를 실시('18.6~11월)
 - * 기존 27개 통신사업자 + 앱마켓 4개사(원스토어, 삼성전자, 구글, 애플) 추가
- (분쟁 해결 강화) 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분쟁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알선·재정 제도 활성화, **분쟁조정제도 도입**(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법사위 계류 '18.2월) 및 **단말장치 리콜 시 이용자 보호조치 근거 마련**('18.5월)
- (자율적 피해구제) 사업자 약관·통신서비스 민원 등을 기반으로 각 분야별 '**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**' 마련(~12월)

나. 이용자 피해·불편사항 개선

- (결제 관련 피해예방) 인터넷 및 앱 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
 - 인터넷방송 유료 아이템 **결제 한도액 하향** 조정(무제한→1일 100만원 이하)
 - ※ 아프리카TV(6.1), 팍콘TV(6.25), 카카오TV(7.6) 시행
 -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이용료 결제 내역을 보호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'**정보이용료알리미서비스**' 도입(미성년자 '18.2월, 지적장애인·고령자 '18.3월)

- (결합상품 해지 간소화) 결합상품 해지 시 기존사업자의 과도한 해지방어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신규상품 가입 시 자동으로 기존 상품이 해지되는 해지절차 간소화방안 마련('18.10월)
- (이용자 차별행위 개선) 방송통신서비스 가입자 모집·이용 과정에서 과도한 할인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('18.5월~)하고 제도 개선 추진
 -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경품 제공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 방지를 위한 「경제적 이익 제공 기준」 (고시) 마련(관계부처 협의중, '18.10월)

다. 이동통신서비스 비용 부담 경감

- (국내·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) 미국·프랑스·독일 등 OECD 주요국 대상으로 프리미엄 단말기의 국내·외 출고가 비교·공시('18.5월~)
- (분리공시제 도입) 단말기 유통구조 투명화를 위해 지원금을 공시할 때 이동사와 제조업자의 재원을 구분하도록 법개정 지원
 - ※ '분리공시제 도입' 관련 7개 의원발의 법안 국회 계류
- (단말기 유통시장 안정화) 유통점의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·강요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(연중), 온라인 유통점의 게릴라식 불·편법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'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' 마련(~12월)
- (주요앱 데이터 소모량 공개) 사용 빈도가 높은 커뮤니케이션앱, 게임앱, 동영상앱, 소셜앱, 지도앱 등을 선정하여 데이터 소모량을 측정하고 홈페이지(www.wiseuser.go.kr)에 공개('18.9월)

□ 향후 계획

-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 공개 : '18. 12월
- 맞춤형 피해구제 기준 마련 : 이동통신 '18. 10월, 초고속인터넷 '18. 12월
- 인터넷개인방송 유료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: '18. 12월
- 이동통신단말기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마련 : '18. 12월

1. 불공정한 갑을관계 청산 및 상생환경 조성

□ 개요

- 외주제작현장의 열악하고 불공정한 환경이 사회 이슈화되며, 방송통신시장 전반의 공정거래 및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

□ 추진 실적

- (외주제작 종합대책 시행) ‘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(‘17.12월)’에 따라 제작비 산정 및 수익배분 등에 관한 ‘가이드라인’과 민간 자율의 독립창작자 인권선언 추진(‘18.3월~)
 - 저작권 양도 강요, 계약서 미작성 등 불공정거래 제재를 위한 방송법 개정* 지원
 - * 이언주 의원(‘17.12.7), 김상훈 의원(‘18.3.7), 고용진 의원(‘18.6.11) 발의
- (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운영) 인터넷기업의 사회적 책무, 국내·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 등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과 공정경쟁을 위한 ‘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’ 구성·운영(‘18.2월~) 및 제도개선방안 마련

1소위 :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방안	2소위 : 방송통신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보호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규제집행력 확보 ▪ 통신사업 규제체계 개선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망중립성 관련 공정경쟁 정책 ▪ 인터넷 생태계 상생 발전

- (방송통신시장 실태 점검) 부처 합동 외주거래 실태점검(‘18.5월~), 홈쇼핑사의 사전영상 제작비 납품업체 전가 행위(‘18.4월~), 유료방송사의 중소PP에 대한 프로그램 사용료 미지급(‘18.9월~), 플랫폼사업자와 중소 CP간 불공정행위 여부(‘18.5월~) 등 분야별 불공정행위 실태 점검

□ 향후 계획

- 외주제작 가이드라인 마련, 외주제작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: ‘18. 12월
-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보고서 마련 : ‘18. 12월
- 이통사와 알뜰폰사업자간 도매제공 부당행위 점검 : ‘18. 11월~

2. 방송한류 확산을 위한 고품질 콘텐츠 제작 기반 마련

□ 개 요

- 제작비 상승과 광고시장 위축, 한류정체 등에 대응하여 방송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원 확보 및 한류 콘텐츠 활성화 지원

□ 추진 실적

- (방송광고제도 개선)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여부 검토, 가상·간접광고·협찬고지 규제 정비 등 **방송광고 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추진**
- (협찬제도 개선) 협찬이 투명하게 거래되고, 건전한 제작재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**협찬제도 개선 추진**
 - 협찬의 정의 신설, 필수적 금지의무(보도프로그램 협찬 금지) 및 방송의 공정성·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찬의 투명성 제고방안 등 규정
- (공동제작협정 체결) 중국과의 FTA 후속협상 참여 및 공동제작협정 체결 협의 재개('18.3월~)
 - **한-베트남 공동제작협정문(안) 실무 합의('18.4월) 및 협정체결 추진, 한·캐나다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협의체 출범('18.8월)**
- (해외 시장 조사) 한류 진출 대상국의 방송콘텐츠 시장과 규제 현황, 구매력 등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업계와 정보 공유('18.4월~)
- (국제 행사 개최) 한류 방송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관심 제고 및 방송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**공동제작 국제 콘퍼런스 개최('18.6월)**

□ 향후 계획

- 방송광고제도, 협찬제도 개선 방안 마련 : '18. 12월
- 한·베 공동제작협정 체결 : '18. 12월
- 해외 5개국 한류 방송콘텐츠 관련 설문조사 실시 : '18. 10월

3. 매체 간 규제 불균형 개선

□ 개 요

- 방송통신 분야의 글로벌 경쟁 심화 및 플랫폼 간 차별성 약화 등에 따라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, 지상파-종편 비대칭 규제 등 불균형 규제를 해소

□ 추진 실적

- (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역차별 해소) 해외 사업자의 불법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제협력 확대, 규제집행력 강화 및 제도 개선 등 추진
 - (제도 개선) 해외 사업자가 개인·위치정보 관련 의무를 이행토록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 도입(망법 개정, '18.9월) 및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고 서식 개정('18.6월)
 - (협력체계 구축) 해외사이트의 불법행위·개인정보 노출 등에 대해 기관 간 공동대응* 및 中·美 등 해외 인터넷 유관기관과 협력 추진
 - * 경찰청·문체부 등 요청으로 불법 해외사이트 950건 차단(~'18.8월)
 - (점검 강화) 주요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점검(연중) 및 해외 CP(페이스북)의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제한 행위 조사·제재('18.3월)
- (종편 비대칭 규제 개선) 종편이 안정적 성장세에 진입한 만큼 타 매체와 종편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비대칭 규제를 재검토
 - (외주제작 편성의무) 지상파 방송사에만 적용중인 외주제작 의무 비율 규제를 종편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편성의무 부과 추진
 - (의무송출 제도) 방송의 공공성 및 경쟁력, 매체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'종편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' 구성·운영 및 개선안 마련(과기부 공동, ~'18.10월)
 - (기금 부과) 지상파와 종편의 기금 부과기준 및 징수율 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

※ '18년 : 지상파(구간별 차등징수율, 0.3~4.3%), 종편·보도PP(별도 동일징수율, 1.5%)

□ 향후 계획

- 국내 대리인 지정 관련 시행령 개정안 마련 : '19. 3월
- 외주제작 편성 규제 관련 방송법 시행령 개정 : '18. 12월
- 기금(분담금) 부과 제도 개선안 마련 : '18. 12월

1. 신규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 및 제도 정비

□ 개요

- UHD, MMS(다채널방송) 등 신규 방송서비스와 VOD, OTT 등 신유형 융합 미디어서비스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시청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한편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

□ 추진 실적

- (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) UHD 방송 의무편성비율('18년 10%)과 콘텐츠 투자 계획 이행 실적 점검 등 지상파 UHD 활성화 추진
- (MMS 본방송 도입) EBS-2TV 시범서비스의 본방송 전환을 위해 국회 계류중인 방송법 개정 추진
 - EBS-2TV를 통해 창의·융합교육 콘텐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신규편성 비율* 확대

* 신규편성비율 : '16년 5% → '17년 11% → '18년 13%(계획)

- (유료방송 VOD 제도 개선) 방송법상 방송의 개념에 VOD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여 콘텐츠 공급 분쟁 등에 적극 대응이 곤란함에 따라 유료방송 VOD의 법적지위 등 제도 개선 추진(과기정통부 협조)
- (OTT 등 신유형서비스 제도 정비) EU 등 해외 제도, 시장 현황 분석 등을 바탕으로 이용자보호 강화 등을 위해 신유형서비스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추진

□ 향후 계획

- OTT 등 신유형서비스 제도 개선 방안 마련 : '18. 12월

2.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조화

□ 개 요

- 개인·위치정보를 활용하는 신규 서비스가 더욱 확대됨에 따라 철저한 보호를 기본으로 하되, 데이터 기반 신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

□ 추진 실적

가. 개인정보의 실질적 보호 강화

- (이용자의 통제권 강화)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해 열람·제공요구, 열람권 보장 절차 등을 포함한 「온라인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」 마련('18.9월)
- (이용자 피해구제 강화) 개인정보 유출 시 효율적 피해 구제를 위해 '손해배상 보험·공제 가입 의무화' 도입(정보통신망법 '18.6월 개정)
 - 시정명령 불이행 등 법 집행이 불가능한 웹/앱에 '서비스 임시중지 명령제'를 도입하고,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부과기준을 상향하는 법 개정 추진
 - ※ 「정보통신망법」 개정안 발의(변재일 의원, '18.2월)
- (동의제도 실질화)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전동의가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(정보통신망법 정부안 '17.3월, 국회계류)로 하고, 동의획득 방법으로 모바일 앱·SNS 등을 추가(시행령, '18.5월 시행)
- (취약분야 점점 강화) 가상통화 취급업소, O2O 사업자 등 개인정보 보호 취약분야를 선정하여 수시 실태조사 실시(연중)
- (자율규제 기반구축) 규제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'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' 시행('18.4월) 및 중소·스타트업 사업자를 위한 '개인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지원' 사업 시행('18.9월~)

나.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

- (비식별조치 활용 확대) 비식별 조치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, 비식별조치의 명시적 근거 마련을 위한 **법제화 지원**(‘18.1월~)
 - ※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방안 마련 관련 4차산업혁명위 규제혁신 해커톤 개최(2차 : 2.1~2, 3차 : 4.3~4) 및 4차특위 활동 결과보고서 의결(5.28)
- 중소기업자에 대한 **비식별조치 활용 교육 및 컨설팅** 추진(연중)
 - ※ 교육 : 5회 171명, 컨설팅 : 25건 27개사(~’18.9월)
- (진입규제 완화)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적은 사물위치정보사업은 **허가제**에서 **신고제로 완화**(‘18.10월 시행)하여 스타트업의 진입을 촉진
- (국제협력 강화) APEC CBPR*(‘17.6월 가입 승인) 운영체계 마련을 통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, 우리 기업의 GDPR** 준수 지원을 위한 교육·상담 추진 및 EU 적정성 평가*** 협의 진행(연중)
 - * CBPR (Cross-Border Privacy Rules) :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로 美, 日 등 가입
 - ** GDPR (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) : ’18.5월 시행된 유럽연합(EU)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, 28개 회원국에 직접 적용되며 역외 사업자에도 적용 가능
 - *** 적정성 평가 : EU가 제3국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여, EU와 본질적으로 동등(적정)하다고 평가되면 해당국으로 EU 시민의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
- 국내 개인정보보호 인증체계의 심사기준과 정합성을 고려하여, CBPR 통합 인증기준(안) 검토 및 사업자 안내서(안) 마련(‘18.9월)

□ 향후 계획

- 보험·공제 가입 의무화 관련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: ‘19.6월
- 사물위치정보사업 신고제 도입 등 위치정보법 시행령 정비 : ~’18.10월

Ⅲ.

주요 현안 과제

① 국내외 인터넷사업자 역차별 해소

□ 개 요

- 국내외 사업자간 '기울어진 운동장' 해소를 위하여 글로벌 사업자의 규제 집행력 강화 등 제도 정비 및 대응 필요

□ 주요 추진내용

- (공론화 기구 운영) 국내·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 등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과 공정경쟁을 위한 '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' 구성·운영('18.2월~12월)
* 법률·경제·미디어 전문가, 소비자·시민 단체, 통신사, 인터넷 기업, 유관단체 등 48명
- (법집행력 강화) '국내 대리인 지정제' 도입(정보통신망법 공포 : 9.18)
※ 전기통신사업법(김성태 의원 발의), 위치정보법에서도 국내 대리인 지정제 도입 논의
- 해외사업자의 위법행위 개선이 불가능(시정명령 3회 위반 등)할 경우 '임시중지명령제' 도입 추진(정보통신망법 변재일 의원안, '18.9월, 과방위 상정)
- (망이용 대가) 국내·외 사업자간 망이용 대가의 부당한 차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('18.8월~)
- 공정한 망이용 대가 협상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,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CP의 통신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규제 근거 검토('18.12월)
- (OTT 대응) 넷플릭스 등 OTT 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, 자료제출, 금지행위 규제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('18.12월)
※ OTT를 방송관련 법령에 포함하는 통합방송법(김성수 의원 발의 예정), IPTV법 개정안(변재일 의원 대표발의) 논의 과정에서 의견 적극 개진

□ 향후계획

- '임시중지명령제' 입법지원, 망이용 대가 실태점검 : '18. 10월~
- OTT 등 신유형 융합서비스 제도개선 방안 마련 : '18. 12월

② 디지털성범죄 유통 차단 대책

□ 개요

- 최근 불법영상 촬영·유포행위가 급증하고 피해도 심각해짐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 수립·추진
※ 「디지털성범죄 산업 특별수사 요구」 청와대 국민청원 : 208,543명('18.8.28 마감)

□ 주요 내용

①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삭제·차단

- 웹하드 사이트 디지털성범죄영상물 유통 집중점검 실시(5.29~9.5, 100일)
 - 51개 웹하드 사업자의 105개 사이트(PC: 58개, 모바일: 47개) 집중점검, 문제 사업자 및 상습유포자 수사의뢰* 등 엄정 대처
* 헤비 업로드 아이디(333개), 채증 이미지 및 사이트 등 자료 제공(3,706건)
 - 음란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미이행 사업자(위드디스크) 과태료 처분 검토
- 불법영상물 선차단(자율규제) 후 긴급심의 실시(현행 10.8일→2~3일)
 - 방심위 '디지털성범죄대응팀' 신설(6명, '18.4.16) 및 긴급심의 실시
※ 종합대책 실시('17.9.26) 후 디지털성범죄영상물 11,630건 삭제('18.9월 기준)

② 기술적 조치

- 불법영상물을 편집 또는 변형하여 유통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DNA 필터링 기술 적용('18.12월)
- 경찰청-방심위간 불법정보공조 시스템 구축('18.12월)

③ 법·제도 정비

- 부가통신사업자가 음란정보 유통 사실 인지 시, 삭제·접속차단 등 조치 의무 신설(전기통신사업법 정부 개정안, '16.12월, 과방위 소위 계류)
- 수사기관의 장 요청 시, 방심위에서 즉시 영상물을 삭제·차단하는 FAST TRACK 마련(정보통신망법 고용진 의원안, '18.6월, 과방위 소위 계류)

- 향후 계획 : 「전기통신사업법」·「정보통신망법」 개정 지원('18.10월~)

IV.

참고 자료

1 2018년 입법계획

□ 국회 제출 법안

연번	법률명	주요 내용	추진일정
1	전과법(일부)	○신고제도 합리화	○국회 제출 : 7월 ○시행 : 공포 후 1개월
2	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일부)	○신고제도 합리화	○국회 제출 : 7월 ○시행 : 공포 후 1개월
3	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(일부)	○행정조사 규정 정비 ○결격사유 합리화	○국회 제출 : 9월 ○시행 : 공포 후 6개월

□ 제출 예정 법안

연번	법률명	주요 내용	추진일정
1	방송법(일부)	○방송분쟁조정 관련 제도정비 ○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행정조사 규정 정비 ○결격사유 및 인·허가제도 합리화 ○신고제도 합리화	○국회 제출 : 11월까지 ○시행 : 공포 후 6개월
2	전기통신사업법(일부)	○통신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의 법적 근거 마련 ○자료제출요구 불응시 이행강제금 부과	○국회 제출 : 12월까지 ○시행 : 공포 후 6개월
3	방송문화진흥회법(일부)	○인·허가제도 합리화	○국회 제출 : 12월까지 ○시행 : 공포 후 6개월
4	한국교육방송공사법(일부)	○인·허가제도 합리화	○국회 제출 : 12월까지 ○시행 : 공포 후 6개월

② 2018년도 세입·세출 예산 개요

1. '18년도 세입예산 및 기금 수입계획

◇ ('17년) 10,146억원 → ('18년) 8,449억원 ('17년 대비 △1,697억원, △16.7%)

□ (일반회계) '18년도 419억원, '17년도 대비 107억원 (34.3%) 증가

- 방송통신사무소 신설에 따라 불법스팸 등 중앙전파관리소 위탁사무 회수로 과태료 수입 대폭 증가 예상 (312억원→419억원, 107억원)

□ (방통기금) '18년도 8,030억원, '17년도 대비 1,804억원 (△18.3%) 감소

- 주파수할당대가 3,542억원(△259억원), 방송사분담금 1,815억원(△219억원), 용자원금회수 43억원(△125억원), 재산(이자)수입 392억원(132억원) 예상
- 정부내수입 1,028억원(△1,014억원) 및 여유자금 회수 1,210억원(△319억원) 예상

※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통위, 과기정통부 공동관리

< '18년도 세입 및 수입 현황 >

(단위 : 억원)

세 입 과 목	'17년 예산(A)	'18년 예산(B)	증 감	
			B-A	%
합 계	10,146	8,449	△ 1,697	△ 16.7
□ 일반회계	312	419	107	34.3
○ 과태료 및 과징금	308	413	105	34.1
○ 기타경상이전수입(정산잔액, 이자반납 등)	4	6	2	50.0
□ 방송통신발전기금	9,834	8,030	△ 1,804	△ 18.3
○ 자체수입				
법정분담금(주파수할당대가, 분담금)	5,835	5,357	△ 478	△ 8.2
용자원금회수등(재산수입, 기타수입 등)	428	435	7	1.6
○ 정부내부수입(공자기금 회수 등)	2,042	1,028	△ 1,014	△ 49.7
○ 여유자금 회수(전년도 결산 이월금)	1,529	1,210	△ 319	△ 20.9

2. '18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 지출계획

◇ ('17년) 2,393억원 → ('18년) 2,386억원 ('17년 대비 △7억원, △0.3%)

- (재원별) 예산 564억원 (19억원), 기금 1,822억원 (△26억원)
- (분야) 통신 664억원 ('17년 대비 +32억원), 방송 1,722억원 ('17년 대비 △39억원)
- (기능별) 인건비 194억원, 기본경비 40억원, 주요사업비 2,153억원

< '18년도 세출 및 지출 현황 >

(단위 : 억원)

구 분		'17년 (A)	'18년 (B)	증 감 (B-A)	%
총 지출 <I+II>		2,393	2,386	△7	△0.3
재 원 별	I. 일반회계	545	564	19	3.5
	II. 방송통신발전기금	1,848	1,822	△26	△1.4
	(기금총계 = ①+②+③+④)	(9,834)	(8,030)	(△1,804)	(△18.3)
	소 계 (㉠+㉡)	7,585	6,683	△902	△11.9
	① 지출				
	㉠ 방송통신위원회	1,848	1,822	△26	△1.4
	㉡ 과학기술정보통신부	5,737	4,861	△876	△15.3
	② 기금관리비	38	40	2	5.3
③ 정부내부지출 (공자기금예탁)	1,000	1,000	-	-	
④ 보전지출 (여유자금 운영 등)	1,211	307	△904	△74.6	
분 야 별	□ 통신분야	632	664	32	5.1
	□ 문화및관광분야	1,761	1,722	△39	△2.2
기 능 별	□ 인건비	173	194	21	12.1
	□ 기본경비	42	40	△2	△-4.8
	□ 사업비	2,178	2,153	△25	△1.1
	① 방송인프라 지원 및 시청자 권익증진	1,202	1,119	△83	△6.9
	② 공정경쟁 및 안전한 정보이용환경조성	254	273	19	7.5
	③ 미디어 다양성 및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	668	693	25	3.7
	④ 방송통신 운영지원	54	68	14	25.9